

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742
----------	-----

2017.11.29.(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이의영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 2017년 11월 21일

다. 회부일자 : 2017년 11월 23일

라. 상정일자 : 2017년 11월 23일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이의영 의원)

가. 제안이유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1항,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고 같은법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또한 도민들의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도내 도시림, 생활림, 가로수의 체계적 조성 및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효율적으로 조성·관리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목적(안 제1조)
-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기능(안 제5조)
 - 도시림 등 조성·관리·기능 증진 등에 관한 사항 심의
-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안 제6조)
 - 공무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전문가, 주민 대표, 시민단체 추천자 등으로 구성
-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회의(안 제11조)

3. 검토보고 요지(산업경제전문위원 : 오성일)

-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의2 제1항, 제4항에 따라 충청북도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구성·운영하고 같은 법이 올해 6월 시행됨에 따라 위원회 설치 의무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 음”

5. 토 론 요 지 : “없 음”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소수 의견 요지 :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라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2. “생활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림 및 수목을 말한다.
3. “가로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충청북도 관할의 도시림·생활림·가로수(이하 “도시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제4조(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북도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

을 심의한다.

1. 도시림 등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도시림 등의 기능 구분에 관한 사항
3. 도시림 등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시림 등의 보전·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시림 등의 기능 증진 및 유지에 관한 사항
6. 도시림 등의 재해 예방 및 복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시·군간 업무 또는 조정 등이 필요할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제6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충청북도 농정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산림녹지과장,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7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이 임시 위원장을 선출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고, 이를 위한 회의 소집은 당연직 위원인 농정국장이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을 경우

②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위원에 대하여, 위원회 소속 위원은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법인·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의결하되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메일 또는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2조(회의의 진행 등) ①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개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 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1시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③ 서기는 위원회 회의가 끝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

1. 회의 개최 및 폐회의 일시·장소
2. 출석위원 서명부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 또는 현지조사 상황
5. 위원 및 출석인 발언 요지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전 심의와 관련해서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장의 의사진행권 등) ① 위원장은 위원 또는 출석한 사람이 안전과 관계없는 사항의 발언 또는 소란행위 등으로 회의진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중지시키거나 당사자를 퇴장시킬 수 있다.

②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5조(의결) 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

1. 안전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의결’ 로 한다.
2. 안전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수정 의결’ 로 한다.
3. 안전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 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한 내에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안전을 심의한 결과 안전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 로 한다.

제16조(현지조사) 위원장은 상정된 안전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전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림“이란 도시에서 국민 보건 휴양·정서함양 및 체험활동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을 말하며, 면 지역과 「자연공원법」 제2조에 따른 공원구역을 제외한다.
5. “생활림“이란 마을숲 등 생활권 주변지역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그 주변지역에서 국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의 제공 및 자연학습교육 등을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시행령) 제2조(정의)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마을숲: 산림문화의 보전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마을 주변에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2. 경관숲: 우수한 산림의 경관자원 보존과 자연학습교육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조성·관리하는 산림 및 수목

6. “가로수“란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와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도로구역 안 또는 그 주변지역에 심는 수목을 말한다.

* 시행령) 제2조(정의)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 도로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 및 리·도

제20조(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20조의2에 따른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의2(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20조에 따른 도시림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21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
3.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과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